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참고자료	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조영신과장(2110-4890), 김성용사무관(2110-4893)

유사(가짜)석유 취급 주유소 더 이상 설자리 없어진다

- 유사석유 적발주유소(1,100여개)에 대해 10.31까지 대대적 시설점검
- 경찰청과 합동으로 10.1~12.31 대대적 유사석유 단속 실시
-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(1회 적발시 등록취소)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

□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, **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강력 대응**키로 함

□ 먼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(1,100여개)를 대상으로 **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**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함

○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**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**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

□ 또한, 유사석유 제조·판매사범에 대한 **상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둠**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어 **10.1~12.31까지 특별단속**을 추진할 계획임

○ 동시에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임

* 상반기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으로 구속 159명, 불구속 1,891명 등 총 2,092명 검거

<불법시설 및 유사석유 특별단속 일정>

단 속 명	기 간	합동기관
불법시설 특별점검	9.27~10.31	소방방재청, 한국석유관리원
유사석유 특별단속	10.1~12.31	경찰청, 한국석유관리원

□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**유사석유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**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에 따라

○ 현재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비밀탱크 설치, 밸브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**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(등록취소)**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키로 함

<현행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적발시 행정처분 기준>

행정처분			과징금
1회	2회	3회	
사업정지 3개월	사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5천만원

○ 또한, "유사석유"라는 용어를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**"가짜석유"로 용어 변경** 추진

□ 최근 5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약 1,100여 업소로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

○ 최근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**비밀탱크 설치, 원격수신장치(리모컨, 발바닥 스위치 등) 조작** 등을 이용해 **지능적으로 발전**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,

○ 비노출검사시험차량, 전파탐지기, 산업용 내시경, GPR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**처벌강화 및 강력한 법집행으로 유사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**한다고 밝힘

* GPR(Ground Penetration Radar) : 레이더를 이용하여 시설파괴 없이 지하 매설물의 영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를 조속히 구매하여 은밀하게 매설되어 있는 지하 비밀탱크 단속을 강화할 계획